

■ 定款 및 諸 規定 ■

사단 대한교통학회 정관

1982. 11. 18 제정, 허가
1984. 4. 28 개정
1986. 4. 26 개정
1991. 10. 19 개정
1993. 10. 9 개정
1995. 4. 29 개정
2001. 11. 17 개정
2004. 2. 21 개정
2004. 11. 13 개정
2009. 11. 6 개정
2012. 2. 18 개정 (2012. 5.10 개정허가)
2015. 2. 14 개정
2019. 2. 22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12. 9 개정 (2020.12.24 개정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교통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KST)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및 유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응용하여 교통의 공학, 경제, 계획, 경영, 행정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2.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교통분야에 관한 도서, 문헌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배포
4.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5. 교통에 관련된 산업 및 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산학협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국제교류) 본회는 취지를 같이 하는 외국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본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원로회원, 단체회원, 간행물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2)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교통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3) 교통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회원이 되기전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4. 우대회원

본학회의 고문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학회발전에 기여한 70세 미만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참여혜택이 주어진다.

5. 원로회원

본학회의 고문, 부회장 또는 우대회원을 역임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학회발전에 기여한 70세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참여와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6.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간행물회원

본 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입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되고,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천된다.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2. 본 회의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본 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본 회의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9조(회비) 모든 회원을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증신회비, 단체회비, 간행물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탈퇴 및 징계) 회원으로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1. 본 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7인 이내
- 4) 이사 70인 이내
- 5) 상임이사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회장은 정원의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6) 감사 2인

2. 본 회의 약간인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임원은 본 회의 제 규정에 따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수석부회장(학술담당) : 학회 학술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2) 부회장(행정담당) : 총무, 재무, 섭외 등 제반 행정에 관한 업무
 - 3) 부회장(공공협력) :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업무
 - 4) 부회장(지회담당) : 지방지회 활동에 관한 업무
 - 5) 부회장(기술담당) : 기술용역분야 활동에 관한 업무
 - 6) 부회장(대외협력) : 국내외 교통관련 기관 및 타학회 관련 업무
 - 7) 부회장(특임담당) : 각종 현안과 관련한 특별 업무
 - 8) 부회장(교육연구) : 교통분야의 교육 업무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6.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필요시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회장(공공협력)은 당해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고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선출의 방법 및 선거인단의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되며 추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지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6.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7. 고문은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서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제15조(기타 기구)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인준한다.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행정담당 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인준과 명예회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3) 정회원의 50인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또는 6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이사정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회부할 안건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 3) 부회장 인준 및 고문, 우대회원, 원로회원의 추대
 -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5)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징계
 - 7) 국제학술단체 가입 및 탈퇴
 - 8)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4.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5.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해외에 체류 중인 이사는 이사회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 2)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부적절한 긴급안건이 있을 때 이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의결사항은 차기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3)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 4) 정기회의 및 학술행사 참가자 사례비
 - 5) 기타사항
3.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4. 감사, 우대회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 관련기관의 학회협력 업무담당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위원회

제22조(편집위원회)

1. 본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담당 부회장을 편집자문으로 하고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1년으로 한다.

제23조(기타위원회)

1. 회장은 본 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

1. 본 회의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기금운영수입 등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금의 종류와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결산) 회장은 회계년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기부 및 보조금)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제8장 부칙

제30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5분의 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회의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학술단체에 기증된다.

제33조(운영규칙) 본 회의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4조(정관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초대 임원선출) 본 정관 제12조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초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6조(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시 현재 고문은 임기완료시 1회 역임한 것으로 한다.

제37조(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시 현재 원로회원인 경우는 원로회원을 유지한다.

제38조(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 시, 기존의 제1, 제2, 제3, 제4, 제5부회장은 각각 부회장(학술담당), 부회장(행정담당), 부회장(공공협력), 부회장(지회담당), 부회장(기술담당)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부회장(대외협력), 부회장(특임담당), 부회장(교육연구)의 임기만료일은 기존 부회장과 동일하다.